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편	드	명	BNK튼튼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변	경	서	류
변	경	사	유
효	력	발	생 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문구 조정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3. (생략) 4. "증권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5. ~ 8. (생략)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 3. (현행과 동일) 4. "증권형"이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<u>법 제 229조제1호의</u>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5. ~ 8. (현행과 동일)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14조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</u>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

		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략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(생략)	여야 한다. ② ~ ⑤ (현행과 동일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<u>종류 및 좌수</u>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 ~ ⑧ (현행과 동일)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<u>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<u>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동일)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	① (생략) ② 제1항의 ---(<u>생략</u>)--- 운용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3. <<u>신설</u>>	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---(<u>생략</u>)--- 운용할 수 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오기 정정	① 다음 ---(<u>생략</u>)---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회계기간이</u>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① 다음 ---(<u>생략</u>)--- 한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<u>계약기간이</u>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 ② ~ ④ (현행과 동일)
제25조(판매가격)	문구 조정	① (생략) ②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<u>신규 수익</u>	① (현행과 동일) ②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<u>신규 종류</u>

		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	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
제34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	문구 조정	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	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① 투자신탁을 --- (생략) 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① 투자신탁을 --- (생략) ---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

		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 하여야 한다. 1. ~ 4. (<u>생략</u>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③ (<u>생략</u>)	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 하여야 한다. 1. ~ 4. (<u>현행과 동일</u>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③ (<u>현행과 동일</u>)
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① (<u>생략</u>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① (<u>현행과 동일</u>)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<u>법시행령 제225조의2에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부칙>		<신설>	< 부 칙 24 > (<u>시행일</u>) 이 투자신탁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